

여비 규정

2021. 12. 06.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적용범위) 본 규정은 광진구체육회(이하 “체육회“라 한다) 임원 및 직원이 임무 수행을 위하여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이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한다.

제2조(정의) 본 규정에서 “여비“라 함은 운임(철도, 항공, 선박, 자동차) 및 체재비(일비, 식비, 숙박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제3조(여비의 지급구분) ① 여비는 운임과 체재비 등으로 구성되며 자체예산의 범위내에서 [별표 1]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운임은 목적지까지의 이동수단에 따라 지급한다. 단, 철도임과 선임을 적용함에 있어 해당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운행등급의 요금을 지급한다.

③ 일비 및 식비는 일수, 숙박비는 숙박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제4조(여행일수 및 여비의 계산) ① 여행일수는 업무로 인하여 소요되는 일수로 계산한다. 다만, 여행도중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추가 소요되는 일수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회장의 승인을 얻어 여행일수에 가산할 수 있다.

② 여비는 순로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다만, 업무형편상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순로에 의한 여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실지 경과한 노정

에 의하여 계산한다.

제5조(신분 등 변경) 출장 중 연도 또는 신분이 변경되어 여비계산을 구분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도 및 발령일을 기준하여 구분한다.

제6조(개산지급) 여비는 출장 전에 소요액을 개산급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귀임 후 5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한다.

제7조(국내여비의 결제와 정산) ① 국내여행자가 여비 중 운임과 숙박비를 결제하는 때에는 체육회 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출장지에서 체육회 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국내여행자는 여행을 완료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기산하여 5일 이내에 운임과 숙박비의 세부사용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운임과 숙박비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8조(여비지급의 특례) 특별한 임무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하여 여비의 정액을 달리하여야 할 경우에는 회장의 승인을 얻어 그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여비지급의 예외) ① 회장은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2인 이상의 직원이 같은 목적으로 통행하여 출장할 경우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하급자에 대하여는 운임(국외 여비를 제외한다)·숙박비 및 식비에 한하여 상급자와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간호자 여비) 출장 중 발병하여 현지에서 가족의 간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가족 1인에 한하여 가족여비로 본인에게 지급되는 여비 해당액을 지급한다. 다만, 이를 증명할 만한 진단서 기타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출장중 사고) 출장 중 질병 또는 불의의 사고로 부득이 체재하게 된 때에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기타 확실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체재비를 추가 지급한다.

제12조(출장중 사망자의 여비) 출장 중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사망 전의 신분에 의하여 사망지로부터 원근무지로 귀환할 때까지에 소요되는 여비의 배를 그 유족에게 지급한다.

제2장 국내여비

제13조(국내여비) 국내 여비는 [별표 2]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본 체육회에서 제공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할 때에는 해당 교통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유료 도로를 이용할 때에는 해당 통행료를 지급한다.

제14조(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① 근무지내 국내출장의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2만원을, 4시간 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1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공용차량 사용시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며, 강습에 따른 출장비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서 “근무지내 국내출장”이라 함은 동일시(특별시 및 광역시를 포함한다)·군 안에서의 출장이나 여행거리가 12킬로미터 미만인 출장을 말한다.

제15조(교통수단 이용) ① 국내 출장시에는 대중교통 및 철도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급을 요하거나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 이를 달리할 수 있다.

② 회장은 시급을 요하는 용무이거나 항공편이 유리하다고 인정할 때에 한하여 항공임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장기체재시의 체재비) 동일한 지역에서 15일 이상 체재하는 때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체재비중 숙박비의 2할을 감하여 지급하며, 60일 초과시에는 초과일수에 대하여 3할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17조(근거리여행) 인접지 40킬로미터 이내의 여행이거나 그 이상의 거리라 하더라도 당일에 용무를 끝마친 후 귀가할 수 있는 충분한 교통편이 있을 때에는 숙박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무의 성질에 따라 부득이 숙박하여야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장 국외여비

제18조(국외여비 기준) ① 국외 여비는 [별표 3]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초청자 부담으로 국외에 출장하는 때에는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초청자 일부 부담의 경우에는 국외 여비 정액의 한도액의 범위 내에서 회장의 승인을 얻어 그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체재비) 체재비는 여행일수에 따라 이를 지급한다. 다만, 동일지에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의 체재비는 그 곳에 도착한 날로부터 계산하여 그 일수가 15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2할, 60일을 초과할 때에는 그 초과일수에 대한

정액의 3할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하여 지급한다.

제20조(부대비) 국외 여비를 받는 자에 대하여는 여비에 다음의 부대비를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예방주사료
2. 출입국세
3. 기타 수속부대비

제21조(보고서 제출 및 등록) 공무국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공무국외여행자는 30일 이내에 공무국외여행보고서를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2조(규정준용) 여비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21. 12. 06.)

제 1 조(시행일) 이 규정은 광진구체육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여비 지급 구분표

구분	대 상 자
제1호	회장, 부회장
제2호	사무국장, 직원

[별표 2]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1인 기준)

(단위 : 원)

여비종류 구분	철도 운임	선박 운임	항공 운임	버스 운임	채재비(1일)			비고
					일비	숙박비	식비	
제1호	실비 (특실)	실비 (1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20,000	
제2호	실비 (일반실)	실비 (2등급)	실비	실비	20,000	실비 (상한액 : 특별시 70,000, 광역시 60,000, 그밖의 지역 50,000)	20,000	

- *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의 운임은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개인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버스운임 대신에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 * 통장적인 관내 여비는 실비를 지급한다
- *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공무원여비규정」 을 준용한다.

[별표 3]

국외여비 지급 기준표(1인 기준)

(단위 : \$)

구분	등급	일비	숙박비 (1박당)	식비 (1일당)
제1호	가	30	실비(상한액 : 176)	81
	나	30	실비(상한액 : 137)	59
	다	30	실비(상한액 : 106)	44
	라	30	실비(상한액 : 81)	37
제2호	가	26	실비(상한액 : 155)	67
	나	26	실비(상한액 : 123)	49
	다	26	실비(상한액 : 90)	37
	라	26	실비(상한액 : 77)	30

- *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 「공무원여비규정」 을 준용한다.